

### 3.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964호 1999. 4. 15.

#### 개 정 이 유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 나.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책임감리대가기준을 폐지함(법 제27조의2).
- 다. 감리원의 겸직금지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영업활동의 제한을 폐지함(현행 제28조의5 삭제).
- 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일지 보고제도를 폐지하여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함(법 제32조).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진흥·개발·활용과 건설

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을 “진흥·개발·활용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 등 경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제1항중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등 용역업자가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

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의5조제2항중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하거나”를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로”를 “설계등 용역업자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품질관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따른”을 “품질관리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제3항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등)”을“(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을“(책임감리대가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중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를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 및 이중으로 소속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감

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및 감리일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타”를 “소속공무원 기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공사감리자”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중 “5분의 1”을 “10분의 1”로,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중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건설기술인협회”로 한다.

제36조의8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각각 “건설기술인협회”로 한다.

제36조의10제1항중 “50명이상”을 “30인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의13제2항중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36조의18 및 제3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 제42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제42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0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